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적극적으로 개입〉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34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8. 12.

다. 회 부 일 : 2024.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독촉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 나.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 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하여 독촉, 소재 파악, 경찰에 조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미취학아동의 관리) ①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독촉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절차는 ① 매년 10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이 당해에 주민등록상 만 6세가 되는 아동을 조사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¹⁾, ② 매년 12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이 취학할 아동의 보

호자에게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실시하며²⁾, ③ 학교별로 대면이 원칙인 예비소집을 실시하면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인해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예비소집 결과 취학대상아동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이 존재하는 등 취학대상 아동의 미취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취학대상아동 소재 확인 현황(매년 2월 기준) >

연도	취학대상 아동	소재 확인	소재 확인 중		
			합계	해외	국내
2022	429,251명	428,972명	44명	43명	1명
2023	415,552명	415,477명	75명	73명	2명
2024	369,441명	369,325명	116명	114명	2명

자료: 교육부

이에 개정안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은 때에는 초등학교의 장이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하고(안 제13조의2 제1항),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 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소불명 등 사유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3조의2 제2항),

독촉 또는 조사 의뢰의 내용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3항).

개정안에 따르면 거소 불명 등으로 독촉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해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므로 아동 안전 확보와 의무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고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미취학 아동 관리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고, 미취학 아동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취학 통지 단계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4항3)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읍·면·동의 장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경찰서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였고,

예비소집 단계에서도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④ 읍·면·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음.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⁴⁾은 취학 의무의 이행과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⁵⁾는 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하지 아니한 경우에 초등학교의 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아동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⁶⁾에서는 독촉·경고 후 3일이 경과하거나 독촉·경

4)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생 략>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보고)

①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이 독촉하거나 경고하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시행령 제27조의27)에서는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독촉 상황을 확인·점검하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③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 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	현행 시행령 및 제도
7일 이내 미취학시 취학 독촉(안 제1항)	- 2일 이내 미취학시 독촉·경고(시행령 제25조)
소재파악 및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 의뢰(안 제2항)	- 독촉·경고 후 3일 경과, 독촉·경고 2회 이상 누적 시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이 독촉·경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 장에게 협조 요청(시행령 제26조) - 예비소집 불응시 학교와 지자체가 유선 연락, 가정방문, 수사 의뢰(제도)
교육부장관·교육감에 게 보고(안 제3항)	- 독촉·경고 2회 이상에도 상태 계속시 교육감에게 보고 (시행령 제26조제4항)

따라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바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이미 제도상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교육부는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이후에도 미취학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취학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장, 읍·면·동 및 교육청에서 단계적으로 취학을 독촉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미취학아동 관리업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여 학교, 읍·면·동 및 교육청 간 관리체계 내실화를 요청 중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미취학아동 취학 독촉 관련 학교, 지자체, 교육청의 역할을 기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달리 학교장에만 미취학아동 관리의무를 부과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교육청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학교에서 미취학 아동 관리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부담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